

사고 및 장애처리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제안요지

1. 제안이유

조직개편(변경승인 제2023-577호)에 따라 일괄개정되어야 하나 조직명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재난안전정책관 → 안전관리처장, 재난안전실장 → 재난안전팀장, 영업팀(장) → 역무운영팀(장), 토목팀(장) → 토목궤도팀(장)”으로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변경승인 제2023-577호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사고 및 장애처리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

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고 및 장애처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4조(철도사고 등의 즉시보고), 제5조(사고보고), 제6조(철도사고 등의 조사보고), 제7조(철도사고등에 대한 자료의 보고), 제13조(철도사고 등의 조사), 제14조(사고조사반 구성), 제16조(피해액 등 조사), 제21조(조사결과 조치), 제22조(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준비), 제32조(역 안에서 발생한 사상사고), 제33조(역 밖에서 발생한 사상사고), 제37조(비용 등의 지급), 제39조(위원회 구성 및 위원), 제45조(사고통계의 관리 등), [별표 2]사고보고계통도(즉시보고), [별표 5] 철도사고 조사 절차 및 방법, [별지 제6호 서식]출석 통지서”에서 “재난안전정책관 → 안전관리처장, 재난안전실장 → 재난안전팀장, 영업팀(장) → 역무운영팀(장), 토목팀(장) → 토목궤도팀(장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제4조(철도사고 등의 즉시보고)④ 제2항의 사고보고 후 재난안전정책관(재난안전실장)-----영업팀장-----</p> <p>⑦ ----- 종합관계처장은 사장(재난안전정책관)-----</p> <p>제5조(사고보고)② -----재난안전정책관--</p> <p>④ 제2항의 철도사고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4. --사장(재난안전정책관)-----</p> <p>5. ---사장(재난안전정책관)-----</p> <p>제6조(철도사고 등의 조사보고) ① 재난안전정책관-----</p> <p>④ 재난안전정책관(재난안전실장)-----</p> <p>제7조(철도사고등에 대한 자료의 보고) ① 재난안전정책관(재난안전실장)-----</p>	<p>제4조(철도사고 등의 즉시보고)④ 제2항의 사고보고 후 안전관리처장(재난안전팀장)-----역무운영팀장</p> <p>⑦ ----- 종합관계처장은 사장(안전관리처장)-----</p> <p>제5조(사고보고)② ---안전관리처장---</p> <p>④ 제2항의 철도사고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4. --사장(안전관리처장)-----</p> <p>5. ---사장(안전관리처장)-----</p> <p>제6조(철도사고 등의 조사보고) ① 안전관리처장-----</p> <p>④ 안전관리처장(재난안전팀장)-----</p> <p>제7조(철도사고등에 대한 자료의 보고) ① 안전관리처장(재난안전팀장)-----</p>

현행	개정 (안)
제13조(철도사고 등의 조사) ① ----재난안전정책관 ----	제13조(철도사고 등의 조사) ① ----안전관리처장 ----
② 재난안전정책관-----	② 안전관리처장-----
④ 재난안전실장-----	④ 재난안전팀장-----
제14조(사고조사반 구성) ① 재난 안전정책관은 -----	제14조(사고조사반 구성) ① 안전 관리처장 -----
②---재난안전실장-----	②---재난안전팀장-----
제16조(피해액 등 조사)	제16조(피해액 등 조사)
②---재난안전정책관----영업팀장	②---안전관리처장----역무운영팀
제21조(조사결과 조치) ① 재난안 전정책관----③ 재난안전정책관 ---④ --사장(재난안전정책 관)-----	제21조(조사결과 조치) ① 안전관 리처장----③ 안전관리처장--- ④ --사장(안전관리처장)-----
제22조(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준비)② ---재난안전정책관-----	제22조(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준비)② ---안전관리처장-----
제32조(역 안에서 발생한 사상사 고) ① ----영업팀장-----	제32조(역 안에서 발생한 사상사 고) ① ----역무운영팀-----

현행	개정 (안)
제33조(역 밖에서 발생한 사상사고) ① ---- 토목팀 ---- ②---- 토목팀 ----	제33조(역 밖에서 발생한 사상사고) ① --- 토목제도팀 --- ②--- 토목제도팀 ---
제37조(비용 등의 지급) ---- 역무운영팀 ----	제37조(비용 등의 지급) ①---- 역무운영팀장 ----
제39조(위원회 구성 및 위원) ① --- 재난안전정책관 --- ④--- 재난안전실장 ---	제39조(위원회 구성 및 위원) ① --- 안전관리처장 --- ④--- 재난안전팀장 ---
제45조(사고통계의 관리 등) ① 재난안전실장 --- ② 재난안전실장 ---	제45조(사고통계의 관리 등) ① 재난안전팀장 --- ② 재난안전팀장 ---
<p>[별표 2] (제8조, 제11조, 제12조 관련) 사고보고계통도(즉시보고)</p> <p>재난안전정책관(재난안전실장)</p> <p>[별표 5] 철도사고 조사 절차 및 방법</p> <p>12) “사고조사반장”이라 함은 재난안전실장을 말한다.</p> <p>[별지 제6호 서식]</p> <p>출석 통지서</p> <p>재난안전정책관</p>	<p>[별표 2] (제8조, 제11조, 제12조 관련) 사고보고계통도(즉시보고)</p> <p>안전관리처장(재난안전팀장)</p> <p>[별표 5] 철도사고 조사 절차 및 방법</p> <p>12) “사고조사반장”이라 함은 재난안전팀장을 말한다.</p> <p>[별지 제6호 서식]</p> <p>출석 통지서</p> <p>안전관리처장</p>